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11. 8
사회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5. 11. 3

나.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다. 회부일자 : 95. 11. 3

라. 상정 및 의결

○ 제4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상정 : 95. 11. 7
-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의결 : 95. 11. 7

2. 제안설명요지

가. 제안사유

1995년3월4일 대통령령 제14564호로 의료보호시행령 개정 및 1995년8월18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제346호)으로 인한 용어 변경임.

나. 관련근거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호

다. 주요골자

○ "의료보험법"을 "의료보호법"으로 명칭 변경 〔(안) 제3조〕

○ "기금출납원"을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회계관직명을 변경코자 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 백창기)

본 조례 개정안은 법의 명칭과 회계공무원의 회계관직명을 법령과 일치되게 변경하여 의료보호특별회계 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 요지(답변자 : 사회복지계장 김목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본조례 개정의 관련근거인 의료보호법 시행령령이 95년3월4일자로 개정되었는 바, 8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안건이 지연 제출된 이유는?	• 사회과 및 가정복지과의 업무통·폐합으로 업무의 복합조정 등 인수·인계관리 업무의 폭주로 인해 지연제출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반대없음)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95-45

제출년월일 : 95. 10.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사 회 과)

1. 제안이유

○ 의료보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된 동법시행령에 일치되게 개정하여

○ 달서구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

2. 근거법령

○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

3. 주요골자

○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변경(안 제4조등)

○ 의료보장계장을 사회복지계장으로 변경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 · 구조문 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의료보험법"을 "의료보호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제5조·제6조제1항 및 제3항·제7조제1항 및 제2항·제8조제1항중 "기금출납명령관"을 각각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을 각각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 ……의료보호법…… …… …… …….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구의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보장계장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구의 사회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계장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 …… ……기금

현 행	개 정 (안)
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과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운용관……기금출납원…….
제6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 ① 기금운용관…….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
제7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를 행한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보호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 기금운용관……기금출납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원…….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 기금운용관…….

현 · 행	개 정 (안)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③ (생략)	1. …… 2. …… 3. …… ②~③ (현행과 같음)